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나356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나356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507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울

담당변호사 임정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하명진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19.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5079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37,6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037,6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이 한 2022. 12. 6.자 석명준비명령을 위반하여 피고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2023. 12. 13.에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본안에 관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등을 채권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말소되었고, 그 중 3건의 가압류등기 말소사유는 B에 대하여 진행된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8개회73069호)에서 2019. 5. 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이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위 회생절차는 2020. 4. 7. 폐지되었다)
- ②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4.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2. 14.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7,037,679원(= 잔존 원금 9,047,188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990,4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7,037,6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 배상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27,037,6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헌우, 판사 조규설, 판사 이영풍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

1층 14.6㎡

2층 129.06㎡

3층 129.06㎡

4층 129.06㎡

5층 129.06㎡

6층 128.58㎡

옥탑 1층 14.69㎡(연면적제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39.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16.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341.9㎡3.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17.5㎡4.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21.3㎡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696.8분의 25.1783. 끝.

